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9

제시판 / 116

현상설계경기 / 117

인터넷건축여행 / 12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6

신입회원 / 128

## 협회소식 KIRA news

##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 제2차 회의 개최

3국대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공동노력

건축설계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한·중·일 3개국 건축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설계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펼쳤다. 우리협회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등 한·중·일 3개국 민간 건축대표단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 하얏트리전시호텔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갖고 시장개방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문제 등 참가국간 건축설계분야의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리협회 김영수회장, 중국의 우이랑 회장, 일본의 사와다 미쓰루사 회장 등 3개국 건축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각국 국제위원회 위원과 정부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참가국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빌전적 논의와 함께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가별 현황보고후 가진 협의회 운영규정 및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안)'을 제시해 중국과 일본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회장과 김규태 전 임회장, 이정근 국제위원장, 김지덕 이관영 국제위원 등 협회인사 5인과 최종수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이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

김기철 이사, 이근창 국제위원 등이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동북아지역 3개국 건축사단체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문,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정책·법규 등의 자료교환, 학술·문화사업 협력,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북경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결성키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탄생되었다. 차기 회의는 내년 하반기중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오는 5월 14일 협회 대강당에서

우리 협회는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종 건축기준의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돼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IMF경제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극복과 국제적 건축물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 제1주제: 건축법 개정방안

시간 / 10:00~13:20

좌장 / 이문보(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 조우현(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시국장

토론자 /

김종익(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김천주(대한주택클럽연합회 회장)

김재열(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담당 과장)

변영진(서울특별시 주택국장)

김기철(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 제2주제: 건축사법 개정방안

시간 / 14:30~17:40

좌장 / 이명호(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 최종수(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토론자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용묵(소비자보호원 주택생활용품팀장)

정기용(건축사사무소 기용 대표)

양갑(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사)

최찬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세훈(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6회

### <부의사항>

- 제1호의안: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안) 주요내용>

▶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98. 3. 26)에서 개별위원회규정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운영총칙을 전반적으로 정비코자 ▶부위원장직을 삭제(제2 · 3 · 4조)해 위원회구성을 현실화하였으며 ▶ 위원직무(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성립, 결정절차(제7조) ▶소위원회 구성(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제9조) 등에 관한 신설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 제2호의안: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사무기구 개편( '98. 2. 1)에 따른 현 2인 본부장체제를 1인체제로 단일화(기획운영본부와 사업관리본부를 운영관리본부로, 기획운영회계팀과 사업관리회계팀을 회계팀으로 각각 통합해 2본부 4실 9팀 1연구소 1교육원의 현 기구조직을 1본부 4실 8팀 1연구소 1교육원으로 재개편)하고 직원 정원도 현 68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의 결재조항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협회운영에 활성을 기하고자 함.

- 제3호의안 : 보수체제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인사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도록 위임함

### <보수체제개편 관련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인사규정

- 호봉제/자연호봉승급제/수습기간 폐지
- 학력별 최저근무년수 통합 조정
- 건축사회 직원 인사서류의 본협회 제출 조항 삭제
- 연봉제 도입에 따른 직급구분 변경
- 재정보증금의 인상: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정년퇴직상의 폐지 → 공로상에 포함
- 징계위원회 위원 추가(회원 1인 → 2인)
- 징계의 처분 절차 구분 → 1차: 징계위원회, 재심: 이사회 또는 간사회

## 근무평정규칙

- 직무내용에 따른 평정대상의 구분 (간부직/일반직/기능직)
- 평정항목 세분화
- 상호평정도입 근거 마련
- 평정결과 예고제 시행

## 복무규정

- 결근 처리절차 구체화
- 인수인계시 상급자의 입회 조항 삭제

## 보수규정

- 정의(제2조) → 연봉: 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 제외
- 연봉결정(제4조) → 차년도 연봉계약 시 전년도의 연봉 및 차년도의 기본급 인상을 및 근무평정결과를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
- 연봉지급(제5조) →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연봉계산(제6조) → 퇴직시 최저 근무일수 연장 (2일→15일)
- 승진 및 징계시의 보수(제7조) → 승진 시: 기본급의 5% 범위내에서 차기년도 연봉에 가산하여 책정, 징계시: 징계일로부터 해당월까지 봉급의 90% 지급
- 제수당(제11조) → · 시간외근무 산정 기준 조정 (근무시간 전후 1시간 제외)  
· 연 · 월차수당 및 가족수당은 연봉에 포함 지급

- 퇴직급여금(제13조) → · 퇴직적금 보조 / 퇴직금 누진제 폐지  
· 퇴직금은 연봉계약만료후 차년도 1월 봉급에 포함 지급
- 제4호의안: 상근부회장 선임 승인의 건

## 이사회 개최

###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4월 6일